

4. 不動產登記法中 改正法律(案) 立法豫告

法務部 公告 第1996-29號 1996. 9. 9

주 요 내 용

가.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신설

-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두어 대법원규칙으로 대상등기 및 수수료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
-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 미납시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함.

나. 등기사무의 전산처리

- 등기사무 전산처리의 근거규정을 정하고
- 전산등기부의 보관·관리와 사무처리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.

다. 실무관행과 불일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

- 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 지원장이 등기공무원을 지정하도록하여 감독권과 지정권을 일치시키고
-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지 않고 등기부 열람을 허용하고
-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사항과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
-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대장등본등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도록 하고
- 비법인 사단·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동산소재지 관할이외의 시장·군수도 부여토록 하고
-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척오·유루시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 선경정후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보고토록하여 신속성을 기하고
- 토지의 분합, 멸실, 면적의 증감, 지목의 변경시 지적공무원의 의무적 등기촉탁사유이므로 당사자가 위 사항에 관한 등기신청을 지연하여도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함.

개정취지

부동산등기 전산화 및 등기소 신·재축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기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특례를 정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 전반에 관하여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(참조: 법무심의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기타

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(500-223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택회보